

##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김근한·김민성 의원(2인)

찬 성 자: 강승수·김낙관·김원섭·김춘남·  
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  
장미경·정지원 의원(10인)

## 1. 제안이유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다. 소송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지방자치법」 제7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4. 조례안: 붙임

##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등”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직원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

라.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의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의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수사(수사 대상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구

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약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근로계약서 중 한 가지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지급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
6.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 ①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소송비용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원 등이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의원은 제3조 각 호의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별지제4호 서식의 소송비용 반납액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판단

2.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 그 밖에 의정 및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의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 소송	가. 본안사건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80만원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00만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400만원 이내 (3)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천만원 미만: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1,000만원	○ 신청서 ○ 소제기 증명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형사 소송	○ 수사단계, 형사재판	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 원 이내 ※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제외 대상 (1) 피의자: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 처분 (2) 고소인: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 나.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p>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p> <p>-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p> <p>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확정증명원</li> <li>○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li> </ul>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p>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p> <p>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p> <p>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p> <p>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p> <p>마. 증인여비</p> <p>(1)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p> <p>(2) 직원: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금액</p> <p>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li> <li>○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li> </ul>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확 약 서

- 소           속:
- 직           위:
- 성           명:

의정활동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수행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구미시의회의 소송비용 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구미시의회에서 지원 받은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환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구미시의회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환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지원한 비용 등의 환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 ○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중

<b>소송 결과 보고서</b>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한시적인 경비로 예상됨.  
(민사 및 형사소송 지원 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  
-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참고

### 4.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원운정 주무관(행정번호 6447)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